



직제 규정

규정 번호	2-1-1
제정 일자	2001. 3. 1.
개정 일자	2024.8.30.
책임부서/팀	기획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순효학원의 정관 제7장 제2절 및 신안산대학교 학칙 제15장에 의하여 본 대학의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운동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2조(기구) ① 신안산대학교(이하 '본 대학'이라함)의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계열 및 학과를 두며,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로 교무처, 입학학생처, 기획처, 대외협력처 사무처를 둔다. <2015.8.1., 2019.11.14., 2021.8.20., 2023.2.23., 2024.3.22. 개정>

② 산학협력사업을 관리, 지원하는 독립법인으로서 산학협력단을 둔다.

제3조(부속기관) 본 대학에 부속기관으로서 도서관, <삭제>, 국제교류협력원, <삭제>, <삭제>, <삭제>, <삭제>, <삭제>, <삭제>, 교육방송국, 학보사, 예비군대대, 현장실습지원센터, 인권센터, 전산정보원, 원격교육지원센터, 교수학습지원센터, 학사학위운영센터, 공간활용센터, 성과관리센터, 선교지원센터를 둔다. <2009.5.20., 2012.3.26., 2014.3.1., 2015.8.1., 2015.10.20., 2019.03.12., 2019.11.14., 2021.8.20., 2022.4.21., 2024.3.22. 개정>

제4조(부설기관) 본 대학에 부설기관으로 평생교육원을 둔다. <2021.8.20. 개정>

제5조(총장 등) ① 총장은 대학을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, 학생을 지도하며,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 <2017.12.11. 개정> <2019.11.14. 개정>

② 본 대학에는 부총장 및 대학본부, 부속기관, 부설기관에 부서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, 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 총장이 임명한다. 또한, 겸보할 수 있다. 다만 필요한 경우 비전임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.<개정 2017.12.11., 2019.2.8., 2024.8.30.>

③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,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<2017.12.11. 개정>

④ 대학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임 부총장을 둘 수 있다. <2019.2.8. 신설>

제6조(학과)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7조(교무처) ① 교무처에는 처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, 처장과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<2019.11.14., 2021.8.20., 2023.2.23., 2023.9.21., 2024.3.22.개정>

② 교무처는 교원인사, 수업, 학적, 실험실습, 전공심화, 교육과정개발, 교수학습, 현장실습, 원격교육, 학생, 장학, 학보사, 교육방송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 <2019.03.12., 2021.8.20., 2023.2.23., 2024.3.22. 개정>

③ <2021.8.20. 삭제>

④ 교무처에는 교무팀, 원격교육지원센터, 교수학습지원센터, 학사학위운영센터를 둔다.

<2021.8.20., 2023.2.23., 2024.3.22. 개정>

제7조의2(입학학생처) ① <2023.2.23. 삭제>

② 입학학생처에는 처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, 처장과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<2024.3.22. 제정>

③ 입학학생처는 입시, 홍보, 학생, 장학, 학보사, 교육방송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
<2024.3.22. 제정>

④ 입학학생처에는 입학팀, 학생팀, 보건실, 상담실, 인권센터를 둔다.<2024.3.22. 제정>

제7조의3(대외협력처) ① 대외협력처에는 처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, 처장과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<2021.8.20., 2023.2.23., 2023.9.21., 2024.3.22. 개정>

② 대외협력처는 산학협력, 현장실습, 취창업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,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지원한다.<2015.8.1., 2021.8.20., 2023.2.23., 2024.3.22. 개정>

③ <2019.03.12.개정, 2021.8.20. 삭제>

④ 대외협력처에는 산학협력팀, P-TECH공동훈련센터,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.<2021.8.20. 제정, 2023.2.23., 2023.9.21., 2024.3.22. 개정>

제7조의4(기획처) ① 기획처의 처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, 처장과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<2021.8.20., 2023.9.21. 개정>

② 기획처는 기획·예산, 교직원 연수, 구조개혁, 성과관리, 정보시스템,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 <2021.8.20., 2023.2.23. 개정>

③ 기획처에는 기획팀, 성과관리센터를 둔다. <2021.8.20. 제정, 2023.2.23., 2024.3.22. 개정>

제7조의5(사무처) ① 사무처의 처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5급 이상의 직원 또는 전문경력 계약직으로 보한다. 또한 각처에는 필요에 따라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 <2019.03.12., 2019.11.14., 2021.4.30., 2023.9.21., 2024.3.22. 개정>

② 사무처는 서무, 구매, 시설관리, 실험실습, 경리, 관재, 직원인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<2024.3.22. 개정>

③ 사무처에는 사무팀, 시설관리팀, 공간활용센터를 둔다. <2021.8.20. 제정, 2024.3.22. 개정>

제7조의6(입학홍보처) <2023. 2. 23. 삭제>

제8조(산학협력단)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5급직원 이상으로 보한다.<2021.4.30. 개정>

② 산학협력단은 재정지원사업, 산학협력사업, 산학연컨소시엄사업, 디자인 지원사업, 산학협력단 회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
③ 산학협력단에는 행정지원실, 디자인종합지원센터,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, 산학협동연구소를 둔다. <2009.5.20. 개정>

④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9조(도서관) ① 도서관의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5급 직원 이상으로 보한다. <2021.4.30. 개정>

② <2004.5.24. 삭제>

③ 도서관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9조의2(전산정보원) ① 전산정보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<2021.8.20. 삭제, 2024.3.22. 제정>

② 전산정보원은 학사행정시스템, 입시전산, 정보보안, 네트워크, 서버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<2024.3.22. 제정>

③ 전산정보원에는 전산팀을 둔다.<2024.3.22. 제정>

제9조의3(국제교류협력원) ① 국제교류협력원에 원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<2012.12.20. 개정(명칭변경)>

② 국제교류협력원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9조의4(교육방송국) <삭제 2024.8.30.>

제9조의5(학보사) <삭제 2024.8.30.>

제9조의6(예비군대대) ① 본 대학에 예비군대대를 둔다.

② 예비군대대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9조의7(미디어센터) ① 미디어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<신설 2024.8.30.>

다만, 필요 시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.

② 미디어센터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신설 2024.8.30.>

제10조(평생교육원) ① 평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, 원장과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 또는 평생교육원 규정에 해당하는 교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21.02.26., 2021.8.20., 2022.3.10., 2024.4.15.>

② 평생교육원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2021.8.20. 개정>

③ 평생교육원에는 평생교육팀을 둔다. <2021.8.20. 신설>

제11조의1(직업교육혁신지원센터) <2021.8.20. 삭제>

제11조의2(학생지원통합센터) <2021.8.20. 삭제>

제11조의3 <2017.12.11. 삭제>

제11조의3(선교지원센터) ① 선교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보한다.<2021.8.20. 삭제, 2024.3.22. 제정>

제11조의4 <2017.12.11. 삭제>

제11조의5 <2015.8.1. 삭제>

제11조의6 <2019.3.12. 삭제>

제11조의7(취창업지원센터) <2021.8.20. 삭제>

제11조의8 <2019.3.12. 삭제>

제11조의9 <2019.3.12. 삭제>

제11조의10(지역협력지원센터) <2021.02.26. 삭제>

제11조의11(현장실습지원센터) ①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<2021.11.16. 개정>

②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직제 및 운영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<2021.11.16. 개정>

제11조의12(인권센터) ① 인권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
<신설 2022.03.31., 2024.4.15.>

② 인권센터의 직제 및 운영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2022.03.31. 신설>

제11조의13(원격교육지원센터) ① 원격교육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보한다.<2024.3.22. 제정>

② 원격교육지원센터의 직제 및 운영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2024.3.22. 제정>

제11조의14(교수학습지원센터) ①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보한다.<2024.3.22. 제정>

②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직제 및 운영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2024.3.22. 제정>

제11조의15(학사학위운영센터) ① 학사학위운영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보한다.<2024.3.22. 제정>

② 학사학위운영센터의 직제 및 운영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2024.3.22. 제정>

제11조의16(공간활용센터) ① 공간활용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보한다.<2024.3.22. 제정>

② 공간활용센터의 직제 및 운영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2024.3.22. 제정>

제11조의17(성과관리센터) ① 성과관리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보한다.<2024.3.22. 제정>

② 성과관리센터의 직제 및 운영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2024.3.22. 제정>

제12조(사무분장) ① 각 부서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괄(統括)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.

②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따로 이를 정한다.

제13조(임기) 각급 교원의 보직에 대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<개정 2024.4.26.>

제14조(부서설폐(設廢)) 총장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관부서를 신설, 폐합(廢合)할 수 있다. 다만, 제2조(기구)의 개정은 재단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2009.5.20. 개정>
<2019.2.8. 개정>

제15조(위원회) ① 학사행정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둔다.

② 각 위원회의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.

제16조(교직원)

1. 교 원 : 교수, 부교수, 조교수 및 강사 <2014.3.1. 개정> <2019.11.14. 개정>

2. 직 원 :

가. 일반직 : 부이사관(3급), 서기관(4급), 사무관(5급), 주사(6급), 주사보(7급), 서기(8급), 서기보(9급) <2019.11.14. 개정>

나. 기능직 : 운전원, 전기원, 난방원, 건축원, 기계원, 전산원, 방호원, 위생원, 사무보조원(이상 각각 6등급 ~ 9등급) <2019.11.14. 개정>

다. 연봉직 <2019.11.14. 개정>

3. 조 교 <2019.03.12. 개정>

② 제 1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·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행정업무, 교육,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 <2019.03.12. 개정> <2019.11.14. 개정> <2021.02.26. 개정>

제17조(교직원의 정원) 교직원의 정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법인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의 제2조(기구), 제3조(부속기관), 제7조(교무처), 제7조의2(입학학생처), 제7

조의3(대외협력처), 제7조의4(기획처), 제7조의5(사무처), 제9조의2(전산정보실), 제11조의3(선교지원센터), 제11조의13(원격교육지원센터), 제11조의14(교수학습지원센터), 제11조의15(학사학위운영센터), 제11조의16(공간활용센터), 제11조의17(성과관리센터)는 202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